

# 대학별 고사도 있다... '수능 방역' 준하는 대책 마련을

## 코로나시대 '방역 수능' <하> 수능 이후가 더 중요

### 시험 치르는 3일 '특별 방역' 끝나... 후속 대책 미흡 수능 이후 2주간 눈송 등 '줄줄이'... 대학산 분수령 개인 위생 철저... 방역 당국, 완벽한 선제 조치 필요

코로나19 국면 속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는 시험 진행 과정에서의 방역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지만 3차 유행을 감안해 '수능 이후' 방역도 서둘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능은 50만여명의 밀접접촉이 불가피하고, 시험 이후 곧바로 눈송-면접-실기 등 대학별 고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대학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 높다. 하지만 시험장 내 학부모 등 외부인 출입 금지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외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수능 당일(12월 3일)까지다. 교육부는 이 기간 학원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독서실과 스타디움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을 점검한다.

그러나 수능 이후에도 '수능 특별 방역'에 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 현재 교육부에 따르면 확진자는 대학별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격리자는 전국 단위 이동이 제한되지만 권역별 격리자 고사장에서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험이 급한 수험생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해열제를 먹고 시험을 치를 가능성도 점

쳐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 시국에 국가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우려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방역 전문가들은 "수능 이후에 입시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형태의 모양이 있게 되는데, 이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준비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입시 전형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대학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스쿨 수험생들 사이에서 우려를 산 바 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다. 자신을 고3 수험생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대학 자체 고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청원인은 "교육부에서 대학의 자체 고사에 대해 하나하나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능이 치러진 뒤 최소 이틀 뒤부터 최대 2주 뒤까지 각종 눈송, 적성고사 등이 예정돼 있다"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기회를 빼앗는 것은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학생들의 노력을 기만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책 없이 수험생들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고사장으로 내몰지 말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인 30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스타디움에서 광주 북구청 일곡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달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수능 종료 직후 퇴실할 때에도 거리두기를 지키고 바로 귀가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해달라.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까지 생각해야 한다. 수능 직후 우리 수험생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수능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수험생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에 따라 교육청별로 수능 이후부터 졸업식까지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용한 등교·원격 수업을 안내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완벽한 선제조치로 확산세를 막아야 할 것이며, 수험생들은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끝>

## 전남대 2021학년도 수시 전면 실시간 화상면접 전환

전남대학교가 내년 신입생 수시모집을 위한 면접을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한다.

전남대는 11월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매우 빠르고 위험한 상황을 고려해 2021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을 수험생 전원에게 대해 실시간 화상면접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면접 당일 화상면접이 가능한 카메라, 이어폰, 마이크 등이 장착되고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노트북 또는 데스크 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갖추고 ZOOM(<https://zoom.us>)에 접속한 뒤, 사전에 공지된 면접 ID를 입력하고 화상면접실로 입장해야 한다.

면접은 오전 9시, 오후 2시에 각각 시작되지만 신분 확인 등 준비 절차를 감안하면 적어도 40분전까지 입장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특히, 시작 시간 10분전까지 입장하지 않으면, 결사처리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신속한 신분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이 해당된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확인 절차는 녹화되며 10년간 보존된다.

신분확인 후 수험생의 이름은 면접가번호로 변경돼 면접위원은 수험생의 이름 등의 개인정보 일체를 확인할 수 없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된다. 수험생은 면접 중에는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고 또박또박 답변해 부정행위 의심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채희종 기자 chae@

# 생후 2개월 아기 시신 2년간 냉장고에 방치

## 여수 미혼모 출생신고도 안해... 7살·2살 남매는 아동보호기관으로

냉장고 안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기가 숨진 상태로 2년 넘게 냉장고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이 아이의 사망 사실은 식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약취하는 집 안에서 생활 중인 형제들로 인해 드러났다.

여수시와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여촌동 사무소에 '밤이면 다른 집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 집에서 약취가 나는 등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한 주민의 민원이 접수됐다.

동사무소는 나를 후인 지난달 10일 현장에 방

문했지만, 문이 열려 있지 않아 되돌아온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방임 의심 신고를 했다.

지난달 13일 현장조사에 나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집안에서 친모 A씨와 그의 자녀 B(7)군과 출생신고되지 않은 C(2)양을 발견했다. 당시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차 약취가 발생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을 재방문해 친모 A씨와 자녀들을 분리기로 결정하고, 아이들을 아동 쉼터로 이송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아이들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는 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달 27일 쉼터에서 남매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둘째가 쌍둥이로 다른

형제가 더 있다는 B군의 진술을 확보, A씨를 상대로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에 2018년 8월께 집안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가 2개월 후인 10월께 숨겨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집 안을 수색해 냉장고 안에서 숨겨있는 아이를 발견했으며 A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미혼 상태로 아이를 낳았으며, 첫째만 출생신고를 하고 쌍둥이 남매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후 6시부터 음식 등 집에서 일을 했으며, 이 때문에 새벽 2~3시까지 아이들만 자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기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2년 늘려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 이른바 '전관' (前官) 변호사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크게 늘어났다.

법무부는 30일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자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의 경우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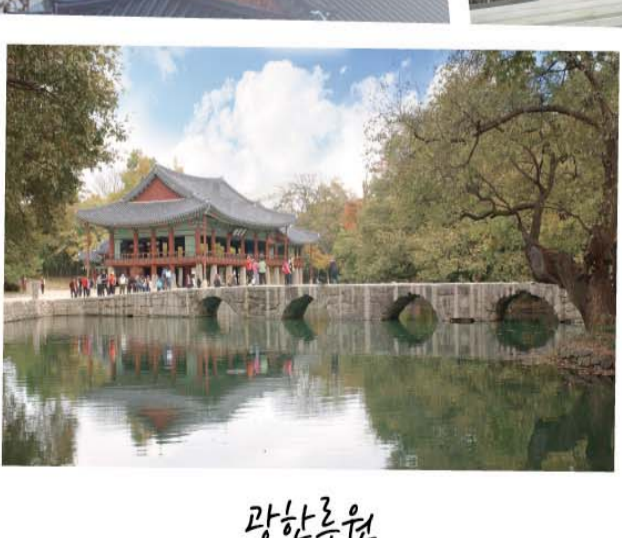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공직자의 경우 현행 기준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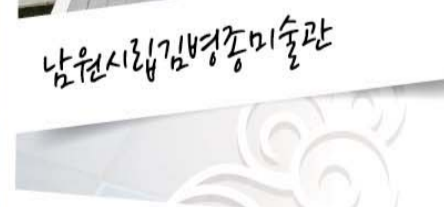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한루원



춘향제